

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. 4. 27 선고 2022가단6181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4. 27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

가.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8. 9. 18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
나. 피고는 소외 C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2018. 9. 18. 접수 제13603호로 마친
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조정현

별지